

#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

농림부

## 1. 사업목적

- 주변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축사시설 설치, 운영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
- 시범사업을 통한 친환경축사시설 모델 보급

## 2. 사업내용

- 친환경 축사로 이전 설치시 축사 설치비, 기반조성비 지원

## 3. 사업주관기관

- 시장·군수 : 동일시군내에서 이전
- 시·도지사 : 시·군간 또는 시·도간 이전(이전 대상지역)

## 4. 지원대상

- 친환경축사 설치·운영을 희망하는 종돈·종계장, 양돈장, 낙농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축산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법인

## 5. 지원조건

- 지원단가 : 종돈장 15억원 이내, 종계장 10, 양돈장 7, 낙농목장 4
- 융자조건(축사) : 연리 3.0%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- 기존축사 철거비 지원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(15백만원/300평)
- 기반조성비 : 기금보조 50%, 지방비30, 자담20
- 지원기준단가 : 진입도로 1km(100백만원), 용수개발 1공구(30백만원), 전기인입시설(1.7백만원)

## 6. 사업량 : 6개소(종돈장 2, 종계장 1, 양돈장 1, 낙농 2)

- 사업물량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

## **7. 지원기준**

- 이전 설치, 운영하고자 하는 축사 설치계획이 전문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적합한 경우

## **8. 사업기간 (2005년부터~2007년까지 3년간)**

- 2005년도(1년차)에는 부지확보, 농지 전용,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적인 사항 추진

## **9. 사업신청**

- 가축사육이 과도하게 많지 않은 지역으로 축사 이전을 희망하고 2005년도 부지확보가 가능한 농가로서 친환경축사시설 설치요건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(시·도지사)에게 신청
- 시·도지사는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농림부에 신청

## **10. 대상자선정**

- 농림부장관은 “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”를 구성하여 대상자선정 및 연차별 지원계획 확정(사업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결정)
  - 구성(9) : 농림부, 농협 등 생산자단체 각 1, 민간전문가 등

## **11. 세부 사업추진내용**

- 시·도별로 친환경축사 모델 검증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, 운영
  - 구성 : 도, 시·군, 축종별 생산자단체, 민간전문가 등
  - 부지가 확보된 사업대상자의 축사모델 등이 친환경축사로 적합한지 여부 검증
  - 기 보급된 우수모델 추천 및 시설설치 고려사항 등 자문
-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축사의 요건 및 검증위원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시설 설치
-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자금 추가지원
  - 기존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지원단가에 의해 신규시설 자금지원
- 기존 축사시설 철거 또는 용도변경(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시설군이 아닌 시설물로 용도변경 신고)
- 농지전용 등 입지확보 협조
  - 이전대상부지가 농지인 경우 검증된 친환경축사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지원(시장·군수가 주민동의 등 협조)

## 12. 사후관리

-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축사·분뇨처리시설 설계, 사양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(전담 컨설턴트를 지정·운영)
- 친환경축사 모델 시범사업 평가(농진청, 농협, 기반공사 등)
  - 친환경축산에 대한 인식, 친환경축사 운영시스템의 효과 등
- 친환경축사시설 홍보 및 모델보급 확대
  - 친환경축사 시설 자료집 발간 및 전문지 등 홍보
- ※ 친환경축사 모델 보급시 장기적으로는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 특별관리지역의 사육시설 이전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

### 〈붙임〉 친환경 축사의 요건

#### □ 친환경축사의 개념

-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고 주변에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축산 시설로서
- 가축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설치, 운영되는 축사

#### □ 친환경축사 요건

- 축사 시설, 주변환경 등이 세부기준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,

구 분	세 부 기 준
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축분과 높가 분리되는 시설 및 장비 확보</li> <li>○ 축산업등록제 기준 이하로 가축사육밀도를 유지</li> <li>○ 약취 저감시설 설치 또는 약취 최소화대책 강구</li> <li>○ 최신 환기시설 설치(돼지, 닭)</li> </ul>
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육장 주변을 깨끗이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</li> <li>○ 축사 도색, 조경수 식재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</li> </ul>
입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밀집사육이 아닌 지역(시·군 기준)</li> <li>○ 주거지역에 인접하지 않고 충분한 부지 확보</li> </ul>
운영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생된 가축분뇨는 퇴·액비화하여 농지에 환원</li> <li>○ 조사료는 가급적 국내산으로 확보(소)</li> <li>○ 이전 전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</li> <li>○ 경영일지 기록 및 평가 등에 자료제공</li> </ul>

\* 축종별 농장 사육단계 HACCP 기준이 설정되면 HACCP 적용

- ◉ 상기 요건 등을 갖추고 시설로서 환경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축사시설 C